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가. 소액수의계약 건적서 제출방법·대상자 관련 개선 (§10-§10의4)

현행	개정
〈신설〉	○ 2천만원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안내 후 동 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함 - G2B를 통한 견적제출의 예외설정

현행	개정
○ 소액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제출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 〈신설〉	- 견적제출안내공고 기간 설정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 공사 : 현행과 동일 - 물품 및 용역 : 예정가격의 88%이상 ○ 소액수의계약 대상자의 결격사유 명시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30) 및 동법시행규칙(§33) 개정내용 반영
- 법령에서 위임된 소액수의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91~§95)

현행	개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 ○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사후정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토록 함 ○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 확인 후 정산 ○ 보험료 납부를 위해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사회보험료의 목적외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촉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2.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대금지급기한 단축(§40 ②)

현행	개정
○ 계약상대자의 청구후 14일 이내 지급	○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지급으로 단축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58) 개정내용 반영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중기특위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

※ 용역 및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

3. 공사입찰유의서

가.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기준일 개선(§3의2②)

현행	개정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개정사유〉

- 위장전입업체(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다시 원 주소지로 이전하는 등 당해 지역소재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개선

나.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특례 설정(§3의3)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 제한경쟁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 - 재난발생일 전 소재지 이전업체 : 현행과 동일(제3조의2제2항 적용) - 재난발생일 이후 소재지 이전업체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

〈개정사유〉

-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제한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과 관련 특례를 마련

4. 예정가격 작성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 계상기준 마련 등(§19③ 제10호 및 제17호)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계상토록 함 ○ 세금과공과에 사업소세를 추가 명시

〈개정사유〉

- 보험료 및 세금과공과료 계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가. PQ대상공사 조정(§5)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PQ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공사 - 상수도건설공사등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건설공사를 삭제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규칙(§23①) 개정내용 반영

나.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일원화(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6②, 별표 1)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00억이상 : 85점이상 	〈삭제〉

〈개정사유〉

- '04.10.1일 개정된 PQ요령(회계예규 2200.04-147-18)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06.7.1일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다.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미충족 시 입찰참여 제한(\$102)

현행	개정
〈신설〉	○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대표자 또는 일부가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개정사유〉

-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

라.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관련 개선 (별표 2)

현행	개정
〈신설〉	○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개정사유〉

- 신기술개발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평가 토록 하여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6. 적격심사기준

가.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개선 (\$7 ④)

현행	개정
〈신설〉	○ 등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음

〈개정사유〉

- 등급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참가확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나. 추정가격 100억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단일화(별표 2)

현행	개정
○ 100억미만~50억원이상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단일화 - 부채비율, 유동비율
○ 50억원미만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개정사유〉

- 매출액순이익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

다. 적격심사의 규모별 공사금액을 조정 (별표 3, 5, 6)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개정내용(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의 규모별 공사금액을 조정

7. 공동계약 운용요령

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규정 보완(§9⑤)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지분율 :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지분율 규정은 분담 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시

〈개정사유〉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명확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



오래오래 살고 싶어 - 십장생

우리의 옛 서화나 조각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십장생. 십장생(十長生)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10가지'를 뜻하며 중국의 신선 사상에서 유래했다. 우리 조상은 십장생을 그림이나 이불의 수, 장롱 자개 등에 넣어 장수를 기원했다.

십장생은 대개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 10가지를 가리킨다. 하지만 사람과 지역에 따라 꼽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즉 12장생도(달, 대나무 포함)가 되기도 하고, 10가지에서 몇 가지가 빠져 8장생도가 되기도 한다.

십장생들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사슴은 약 30년, 학은 40여년, 거북은 100년을 넘게 산다고 한다. 또 소나무의

수명은 300~500년이고, 대나무는 평생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데 그것이 대략 60년이고, 불로초라고 불리는 영지버섯은 십장생 중 수명이 가장 짧아 여름 한 철 2개월 정도만 산다고 한다.

이 십장생에 속하는 것들은 장수의 의미 말고도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해는 세상을 비추는 지혜를 말하고, 산은 불변의 자세, 구름은 풍류를 즐기는 여유, 소나무는 굳은 절개, 물은 맑고 깨끗한 정신, 학은 높은 기상, 대나무는 곧고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 이 모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